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규정

1989년 6월 14일 제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부설 철학사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 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서의 철학사상 및 그 현대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2. 제반 학문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3. 현대 문명과 새로운 문명 모형에 관한 연구
4. 연구 결과의 발표와 보급

제 3 조 (소 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 4 조 (조 직)

1. 연구소에 제1 연구부, 제2 연구부, 제3 연구부, 도서자료실 및 행정실을 둔다.
2. 각 부에는 부장을, 도서자료실에 실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3. 각 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① 제1 연구부는 동서의 철학사상과 그 현대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 ② 제2 연구부는 학문 방법론에 관한 연구
 - ③ 제3 연구부는 현대 문명의 문제와 새로운 대안적 문명 모형에 관한 연구

제 5 조 (연구원 등)

1. 연구소에 연구원, 특별 연구원 및 보조 연구원을 둘 수 있다.
2. 연구원은 전임교수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3. 특별 연구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외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4. 보조 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 6 조 (운영위원회)

1.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부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전임교수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
 - ②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③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 ④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자문 위원) 연구소에 자문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 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한다.

제 8 조 (운영 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